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43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남국·최혜영·김병주

홍성국 · 장철민 · 한준호

이용우 • 이워택 • 임호선

김민철 · 정청래 · 장경태

오영환 · 주철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6조 제2항).

법률 제 호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제2항 중 "지불"을 각각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	제36조(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
소송 절차에서의 화해) ① (생	소송 절차에서의 화해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	②
피해자에 대한 금전 <u>지불</u> 을 내	<u>지급</u>
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	
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	
<u>지불</u> 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	지급
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	
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	
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	
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	
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	
을 신청할 수 있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